

2025년 조사료생산 기계·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23일

서귀포시장

1. 신청자격

-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
-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려는 자

< 지원자격 및 요건 >

- 농업인, 경영체(법인)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**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**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인 등의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**신규 재배지를 확보**한 경우로 한정한다. 단, 장비지원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보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한다.
- 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
2. 지원 대상 사업

연번	사업명	지원규모	사업추진 기간	접수/ 문의처
1	2025년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	130,000천원 (기금 13,000, 도비 39,000, 자담 78,000)	2025. 3. ~ 12월	청정축산과 (760-2803)

※ 전년도 축산분야 농림축산식품사업(조사료 생산기반 확충) 수요조사 참여자 우선순위

- 사업대상
 -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등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는 자
- 사업목적
 - 국산 조사료 생산·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
- 사업내용
 - 조사료 생산·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·장비 구입비 지원

3. 신청 및 접수

가. 신청기간 : 2025. 1. 23.(목) ~ 2025. 2. 6.(목) 17:00까지

나. 신청방법 : 방문제출

다. 접수장소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및 서귀포시 청정축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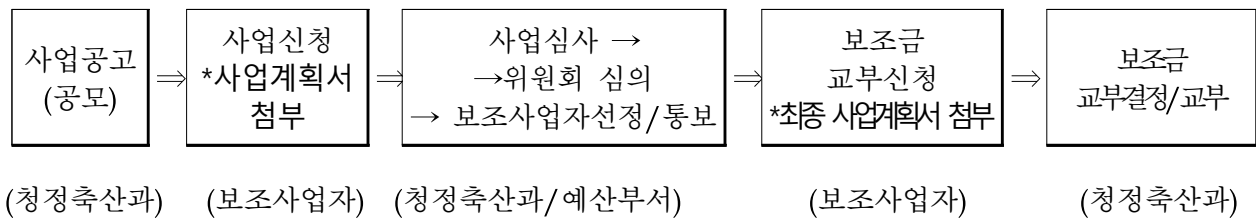
라. 신청서류 : 보조금 지원신청서, 견적서(비교 견적서 추가), 단체소개서, 사업계획서, 법인등기부등본, 조합원명부, 재무제표, 회의록, 농업경영체등록화인서, 축산업 등록증(축종 말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증으로 같음) 조사료재배필지입증서류(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

마. 문의처 :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(☎ 760-2803, 팩스 760-2789)

4.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

-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- 심사기준 : 사업의 적합성, 파급성,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, 신청예산의 타당성, 자부담비율, 전년도 사업 실적 등
- 결과 통보 : 개별 통보

5. 사업추진절차



< 유 의 사 항 >

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)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보조금 전용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: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(자부담 포함)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2. 보조사업의 수행

-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금지
-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
-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

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(☎760-28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